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6일 17시 09분



목차

목차	2
자료실 - 전체	3
'감염병의 진단기준(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-3호)' 개정 알림	3

'감염병의 진단기준(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-3호)' 개정 알림

2019.05.17 조회수 311 등록자 정은영

1. 관련 : 감염병의 진단기준(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-4호)

2. 「감염병의 진단기준(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-3호)」을 개정·발령(2019.4.30.)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 서는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주요 개정 내용

가. 제2군감염병 중 “풍진”을 선천성 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

나. 제3군감염병 중 “말라리아”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

다. 제3군감염병 중 “쯔쯔가무시증”, “브루셀라증”, “신증후군출혈열”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

라. 제3군감염병 중 “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 감염증”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

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(VISA)을 추가

마. 제4군감염병 중 “규열”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,

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

바. 제4군감염병 중 “황열”, “뎅기열”, “치쿤구니아열”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삭제,


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

사. 제4군감염병 중 “웨스트나일열”의 신고범위에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

아. 제4군감염병 중 “지카바이러스감염증”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(전문).hwp (1192 hit/ 165.5 KB) ↓

[미리보기](#)

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(개정문).hwp (1264 hit/ 63.5 KB) ↓

[미리보기](#)

목록

이전글

< [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홍역 예방접종 안내](#)

다음글

[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사 대상자 안내](#) >

Yeosu Web Contents

